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가단2877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지배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9. 28.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100,34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00,3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소외 E 주식회사는 2016. 10. 4. 소외 D에게 8,000,000원을 연체이율 연 16.7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E 주식회사는 2020. 7. 14.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11. 3.경 D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20.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167281호로 'D은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7,016,078원 및 그 중 원금 4,843,9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11. 21. 확정되었다. 2020. 12. 11.자 현재 원고가 D에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원리금 합계 7,100,347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6. 7.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상속지분 3/9) 피고, D을 비롯한 3명의 자녀들(각 상속지분 2/9)이 있었다.

피고와 F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6. 12. 5.자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등기원인은 '2016. 7.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었다). 피고는 2017. 2. 17. 소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D의 재산 상황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실거래가 및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볼 때 116,779,000원 상당이다. D은 2016. 12. 5.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9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5. 2. 5.자로 발생한 H(주)의 자동차 할부금 채무 19,196,000원, 이 사건 대여금, I(주)의 16,202,965원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장의 문서송부촉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상속재산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양보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6. 7. 3.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그 이후인

2016. 10. 4.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장의 문서송부촉탁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6. 12. 5.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2016. 7. 3.은 단지 망인의 사망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가액배상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7. 2. 17. G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중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그 가액 상당(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시가를 116,779,000원으로 볼 때 D의 2/9 지분은 25,950,889원 상당이다)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의 위 2/9지분의 가액 상당액 중 피보전채권액인 7,100,3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100,34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100,3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홍준

부동산의 표시

1. 대구광역시 남구

대 111㎡

2.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4.18㎡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1.74㎡

- 이 상 -

